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3년 5월

[세법개정](#) | [과세관청 소식](#) | [예규·판례](#) | [Contacts](#)

• 예규·판례

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 두 33005 판결)

■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사업자로 상표의 상표권자이고,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는 해당 상표를 사용함.
- ○○○△△△는 2002년부터 화장 전문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BBB와 ‘○○○△△△ 뷰티스쿨’ 상호를 사용하는 대신 ○○○△△△는 그 대가로 BBBB로부터 상호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BBBB는 ‘○○○△△△ 뷰티스쿨’이라는 상호로 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의 사옥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에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함.
- 피고는 ○○○△△△가 원고와 상표 등의 허여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상표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상호를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문화, 방송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브랜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 3자와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보고, (i) ○○○△△△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BBBB로부터 수취한 상호사용료의 60%에 해당하는 1,452,490,145 원, (ii) 같은 기간 ○○○△△△의 매출액 중 문화사업 및 방송교육 사업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2,089,508,344 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2013. 1. 2. 원고에게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156,853,762 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하였음

■ 쟁점

- 원고가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해당 사안, 원고 패)

-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함.
 - ✓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이에 대법원은 원고가 계열회사에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공사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감심 2022-1757, 2023.05.15)

■ 처분의 경위

- 청구인은 2020. 5. 7. 강원도 ○○시 ○○에 사옥(2,999.16㎡,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 해 5. 21.과 같은 해 9. 14. 취득가액 계 4,367,638,181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114,789,130 원을 신고·납부하였음
- 처분청은 2021. 10. 6.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건물의 인테리어공사, 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경관조명공사 등(이하 “쟁점 공사”

이라 한다)에 대한 대금 일부 계 490,330,714 원이 쟁점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2. 2. 7. 취득세 등 계 15,850,550 원 1)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임

■ 쟁점

-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공사의 비용(이하 “쟁점 비용”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임

■ 결정이유(기각)

- 감사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쟁점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 쟁점 공사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에 따르면 사용승인일 이전에 공종별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 비용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쟁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 ✓ 청구인은 쟁점 비용이 사용승인일 이후 지급되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기간 개시일이 사용승인일 이후인 것을 근거로 쟁점 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 비용이 사용승인일 이후 진행된 공사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이 항상 공정비율과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완료일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기간 개시일로 일반화할 수도 없는 점
 - ✓ 처분청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쟁점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한 점

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2, 2023.05.08)

■ 질의

(사실관계)

- 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자 비영리내국법인으로 2020.12.24. 운영 중인 병원이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 조 및 제 70 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함
- A 법인은 쟁점손실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하고, 간접비용 및 보전 받은 직접비용은 손금으로 하여 202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손실보상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익금불산입하고, 간접비용(일반관리비) 104 억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소득금액 조정하여 경정청구함

(질의내용)

- 코로나 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

■ 회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을 원천으로 지출한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라.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국조, 서면-2022-국제세원-2602, 2023.05.22.)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금융리스부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 67 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2-원천-4578, 2023.05.09)

■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기기 및 ○○ ○○ ○○ 제품을 수출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임
- 회사는 '17.3.31.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그 조건은 행사가 7,200 원, 신주 발행, 3 년 경과부터 5 년 내 행사임

- '18.6.19. K-OTC*에서 당사를 지정등록하여 K-OTC 에서 보통 주식이 거래되고 있음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 '21.4.26.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었고, 회사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계산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함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시가를 산정할 때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하며 K-OTC 에서 거래되는 보통 주식을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함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2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 제 1 항에서와 같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 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시세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2023.05.15)

■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 회신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130 조 제 1 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236, 2023.05.02)

■ 질의

(사실관계)

- (주)☆☆에너지(이하 “신청법인”)는 LPG 9,424 kg을 공급한 것에 대하여 ’23.4.10. 공급가액이 34 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LPG 14,724 kg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이 54 백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23.4.11.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질의요지)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 70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 60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